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2B-2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2017.11.2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14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주택(아파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와 2순위는 현행과 같이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청약 자격 강화로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2순위 청약 가능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예비당첨자 비율 20%에서 4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3호 바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단, 본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ut-hoba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가능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됨.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 ■ 본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거하여 지역 제한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2017년 1월 20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본 주택의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에 충족할 경우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제1항 및「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규정에 의거 최초로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01.16)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단,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모든 주택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부산 기장군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민간택지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택지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ut-hoban.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의거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 66968호(2017.12.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2B-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5층 12개동 총 5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55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5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5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산업단지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민영 주택	2017001790-01	84.9801A	84.9801	24.1193	109.0994	59.5810	168.6804	52.2557	442	44	44	44	44	13	253	30	2020년 02월
	2017001790-02	84.8996B	84.8996	24.1768	109.0764	59.5248	168.6012	52.2062	74	7	7	7	7	2	44	5	
	2017001790-03	84.8233C	84.8233	24.1569	108.9802	59.4713	168.4515	52.1593	45	4	4	4	4	1	28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세대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2018.02.12	2018.04.13	2018.07.13	2018.10.12	2019.03.13	2019.07.12	2019.10.14	입주지정일
84.9801A	442	전체동	1층	26	77,979,000	216,621,000	294,600,000	10,000,000	19,6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88,600,000
			2층	30	77,979,000	230,021,000	308,000,000	10,000,000	20,9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900,000
		201~203동 1,3호 / 209동 1~4호 / 210동 1~2호	3층	12	77,979,000	243,421,000	321,400,000	10,000,000	22,3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96,500,000
		204동 1~2호 /205~206동 2,4호 / 207~208동 1~4호 / 211~212동 1~2호		18	77,979,000	240,021,000	318,000,000	10,000,000	21,9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95,900,000
		201~203동 1,3호 /209동 1~4호 / 210동 1~2호	4층	12	77,979,000	253,421,000	331,400,000	10,000,000	23,3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500,000
		204동 1~2호 / 205~206동 2,4호 / 207~208동 1~4호 / 211~212동 1~2호		18	77,979,000	250,121,000	328,100,000	10,000,000	22,9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99,000,000
		201~203동 1,3호 /209동 1~4호 / 210동 1~2호	기준층	132	77,979,000	263,521,000	341,500,000	10,000,000	24,3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102,600,000
		204동 1~2호 / 205~206동 2,4호 / 207~208동 1~4호 / 211~212동 1~2호		194	77,979,000	256,821,000	334,800,000	10,000,000	23,6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800,000
84.8996B	74	전체동	1층	4	77,905,000	210,095,000	288,000,000	10,000,000	18,9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900,000
			2층	5	77,905,000	223,195,000	301,100,000	10,000,000	20,2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900,000
		201~203동 2호	3층	3	77,905,000	236,295,000	314,200,000	10,000,000	21,5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4,900,000
		205~206동 3호		2	77,905,000	232,995,000	310,900,000	10,000,000	21,2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93,700,000
		201~203동 2호	4층	3	77,905,000	246,095,000	324,000,000	10,000,000	22,5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7,700,000
		205~206동 3호		2	77,905,000	242,795,000	320,700,000	10,000,000	22,2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500,000
		201~203동 2호	기준층	33	77,905,000	255,895,000	333,800,000	10,000,000	23,5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100,500,000
		205~206동 3호		22	77,905,000	249,395,000	327,300,000	10,000,000	22,8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8,900,000
84.8233C	45	전체동	1층	3	77,835,000	210,165,000	288,000,000	10,000,000	18,9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900,000
			2층	3	77,835,000	223,265,000	301,100,000	10,000,000	20,2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900,000
		201동 4호	3층	1	77,835,000	236,365,000	314,200,000	10,000,000	21,5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4,900,000
		205~206동 1호		2	77,835,000	233,065,000	310,900,000	10,000,000	21,2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93,700,000
		201동 4호	4층	1	77,835,000	246,165,000	324,000,000	10,000,000	22,5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7,700,000
		205~206동 1호		2	77,835,000	242,865,000	320,700,000	10,000,000	22,2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500,000
		201동 4호	기준층	11	77,835,000	255,965,000	333,800,000	10,000,000	23,5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100,500,000
		205~206동 1호		22	77,835,000	249,465,000	327,300,000	10,000,000	22,8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8,9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84.9801A	84.8996B	84.8233C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임.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산업단지 종사자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주택 소유자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함)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 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구분		일시	장소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	2017.12.19.(화)(08:00~17:30), 2017.12.20.(수)(08:00~15:00)	울산테크노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1566-2822)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2017.12.20.(수)(08:00~15:00)	
산업단지 종사자/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7.12.20.(수) 17:00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6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다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7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2.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3.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계
	84.9801A	84.8996B	84.8233C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44	7	4	55
기관추천 특별공급	44	7	4	5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4	7	4	55
신혼부부 특별공급	44	7	4	5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	2	1	16
합계	189	30	17	236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7항)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7항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단, 특별공급 대상기관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주택소유 판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단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함
    1)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입주(예정)기업]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② (연구소)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종사자 ③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2)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세대내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표 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ut-hoban.c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본인휴대전화 SMS 인증 또는 아이핀(i-PIN) 인증) 후 인터넷 청약 하시기 바람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호반베르디움 홈페이지(http://ut-hoban.co.kr) 접속 ⇨ 메인화면의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 ⇨ "청약신청"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및 본인인증 ⇨ 서약서 동의 ⇨ 2B-2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약신청 완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시간은 2017.12.19.(화)(08:00~17:30), 2017.12.20.(수)(08:00~15:00)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 · 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자(금융결제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구 분	대상세대	84.9801A	84.8996B	84.8233C
장애인	19	15	3	1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9	7	1	1
중소기업근로자	10	8	1	1
군인	9	7	1	1
기타(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등)	8	7	1	–
합계	55	44	7	4

-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와 임신 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제5조에 의거 공급하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순위로 공급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 거주자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630,275원) + {1인당 평균소득(333,606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② 기타지역 거주자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분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현재 만19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 대의 세대주 포함)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3호 바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단, 본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본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전국	1순위	전 주택형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추첨제 적용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1)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호반베르디움 홈페이지(http://ut-hoban.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2)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공통
   –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 및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②,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청약가점제 착오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1순위 및 2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산업단지 종사자	전국	• 1일차 : 2017.12.19.(화) [08:00~17:30] • 2일차 : 2017.12.20.(수) [08:00~15:00]	• 인터넷 신청	• 당사 홈페이지(http://ut-hoban.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 2017.12.20.(수) 10: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 울산시 남구 달동 979번지
일반공급	1순위		• 2017.12.21.(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 2017.12.22.(금) 08:00~17:30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일반공급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O	특별공급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은 호반베르디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O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라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종사자 기업의 재직사실확인서 발급의 장)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 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 · 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산업단지 종사자	일시 : 2017.12.20(수) 17:00 장소 : 당사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게재 (http://ut-hoban.co.kr)(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일시 : 2018.01.02(화) 확인방법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http://ut-hoban.c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사 견본주택 홈페이지(예비입주자 포함) (http://ut-hoban.co.kr)	일시 : 2018.01.16(화) ~ 2018.01.18(목) (3일간, 09:30~17:3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일시 : 2017.12.20(수) 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8.01.02(화)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ut-hoban.co.kr)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8.01.02 ~ 2018.01.11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2017.06.15부터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SMS 서비스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1.02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사 홈페이지 http://ut-hoban.co.kr 확인가능)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 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1순위 신청시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2순위 신청시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예비입주자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5 계약체결

■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O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O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산업단지 종사자	O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서약서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O	• 주민등록표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O		• 혼인관계증명서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O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접수장소에 비치), 인감도장(계약자), 인장(대리인),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05.7.1일「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14)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2.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3.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5.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7.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